

# 안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 김진희 의원 대표발의 )

의안 번호	2934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6. 11. /6.

발 의 자 : 김진희의원 등 13 명

## 1. 제안이유

-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라 헌신·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안산시 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.(안 제2조)
- 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3조)
-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방법을 정함.(안 제4조)
- 적십자사 봉사자의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5조)

## 3. 제정조례안 : 붙임1

## 4. 관계법령발췌서 등 : 붙임2

## 5. 예산수반사항 : 붙임3 (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)

## 6.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※ 예고기간 : 2016. 11. 8. ~ 11. 14.

## 7. 기타 참고사항 : 집행부 검토의견서

## 안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안산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적십자사 봉사단체”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안산시지구협의회를 말한다.
2. “적십자사 회원”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안산시지구협의회의 회원을 말한다.
3. “적십자사 사업”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안산시지구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.

**제3조(지원)**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재난구호 활동 지원 사업
2.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
3. 보건의료 활동 지원 사업
4.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된 사업
5. 안산시가 협조 요청하는 활동을 위한 사업
6. 그 밖에 적십자사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

**제4조(신청 및 정산)**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한 자는 사업완료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보조금 신청, 교부,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**제5조(보험가입)** 시장은 적십자사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.

**제6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